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11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생략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를 “한다) 및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9. 안전점검등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의 제목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
준)”을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및 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
등급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를 “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
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3) 중 “연장”을 “연장 20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6호 중 “계측 및”을 “측량·계측 및”으로, “계측”을 “측량·계측”으로, “계측 데이터”를 “측량·계측 데이터”로 한다.

별표 15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표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안전점검 생략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도 별표 3 비고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안전등급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D등급(미흡)·E등급(불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인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같음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등**(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한, 하천종류 및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해 시설물이 된 경우에는 하천종류 및 행정구역 등의 변경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재지정된 경우에는 A등급(우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

을 때까지 위 표의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등**(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 **하천종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하천종류, 행정구역 등의 변경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 **하천종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 변경에 따른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하천종류, 행정구역 등의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6의2.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A등급(우수)이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6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 중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A등급(우수)이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 및 **하천종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을 완료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달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9의2.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단, C·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없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완료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달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종류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토목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교, 공동구, 방음시설
	나.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2.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가. 토목 분야	1) 교량 및 터널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옹벽, 절토사면, 육교, 방음시설
		2)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방음시설
		3) 항만 분야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방음시설
	나.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다. 종합 분야		토목·건축 분야 시설물

비고

1.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종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 위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부과권자
가. 법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 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1호	100 300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
나. 법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4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2호	100 300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 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3항제1호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 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 · 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법 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 개월 미만인 경우		1,0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0	
마.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 지 않은 경우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인 경우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 인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1호	1,500 2,000 3,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
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 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 개월 미만인 경우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2호	600 1,000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 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2호	3,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
아.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 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법 제67조 제2항제2호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많은 경우	의2		· 군수 · 구청장
자.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2호 의3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0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 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1) 제13조제4항(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매우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2,000	
2) 제13조제4항에 따라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1,000	
카.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40조 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6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3항제2호	1,000	국토교통부장관
파.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3호 의2		국토교통부장관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0	
하.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4호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8호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 · 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9호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	
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 · 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	법 제67조 제2항제5호	1차 위반: 600 2차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0 3차 이상 위반: 2,000	
러.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6호	1차 위반: 600 2차 위반: 1,000 3차 이상 위반: 2,000	시장·군수·구청장
머.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6호 의2	1차 위반: 600 2차 위반: 1,000 3차 이상 위반: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법 제67조 제3항제2호 의2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이상 위반: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서.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10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어. 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11호		시·도지사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00	
저. 법 제28조제6항(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12호	200	시·도지사
처.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13호	200	시·도지사
커.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14호	500	시·도지사
터. 법 제38조(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15호	200	시·도지사
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1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900	

경우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0	
허. 법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법 제67조 제3항제2호의3	1차 위반: 100 2차 위반: 300 3차 이상 위반: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고.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2항제8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4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2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000	
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4항제17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도.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3항제3호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비고

- 위 표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머목·버목 및 피목부터 도목까지**에서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위반행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나. 위반행위자가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시·도지사
다. 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 위 표 제2호나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표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 하목 및 **머목·버목·서목·허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국토안전관리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표 제2호**도목**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한 자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 ----- ----- -----.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 ----- ----- 한다) 및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 ③ (생략)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	<삭 제>

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 ③ (생략)
④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 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안전점검등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및 위험표지의 설치 등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596